

한국호스피스협회 자원봉사자 재 인증 보수 평점제

<http://www.hospicekorea.com>

1. 추진 배경

- 1) 지속적인 재교육으로 자원봉사자의 질 관리
- 2) 재교육을 받음으로써 공동체 의식 고취
- 3) 호스피스와 관련한 최신정보의 공유

2. 시행규칙

- 1) 5년 마다 자원봉사자 인증서를 재교부하여 갱신한다.
- 2) 한국호스피스협회가 인정하는 학회 혹은 지회 학술세미나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대하여 일정한 평점을 부여한다.
- 3) 재교부의 인정 평점은 100평점 이상으로 한다.
- 4) 인정 기준

a. 학술분야

- 인정학회, 관련학회
 - a) 한국호스피스협회 학술대회-1일 7평점
 - b)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학술대회-1일 3평점
 - c) 아시아태평양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학술대회-1일 5평점
- 지회 보수교육 : 한국호스피스협회 인정 원칙-3평점
- 기타 한국호스피스협회가 인정하는 과정-3평점
 - . 한국교회호스피스협의회 학술세미나
 - . 한국호스피스간호사회 학술세미나
- 기타 본 협회가 평점을 인정하는 세미나
 - . 기관 보수교육-2평점

b. 봉사분야: 10시간을 1평점 인정

- 1년에 100시간 봉사하면 10평점 인정
- 1년에 200시간 봉사하면 20평점 인정
- 1년에 300시간 봉사하면 30평점 인정

- 5) 재교부 요건이 되지 않으면 자원봉사자 인증의 재 갱신이 되지 않고 인증 자격이 정지되며 2년 후 총 평점이 100점이 되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하고 100점을 넘으면 재 갱신을 한다.

- 6) 면제 사유에 대하여는 한국호스피스협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.
- 7) 각 기관장이 평점을 관리하며 5년 마다 기관장이 지회장에게 제출하며 확인을 받고 협회로 제출하면 재 인증 한다.
- 8) 공지는 06년도 추계 학술대회 때하고 시행은 07년도부터 한다. 2012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재인정을 하여 년 1회 교부한다.
- 9) 모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

3. 제출서류

- 1) 국내학회 참석 증빙서류-평점카드 혹은 참석증, 등록 영수증
- 2) 국외학회-명찰 혹은 참석증
- 3) 기타 증빙서류

4. 면제사유

- 1) 이민 2) 외국체류
- 3) 기타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회가 인정하는 면제사유의 대상이 될 때

5. 기타

- 1) 상기는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회에서 관리한다.
- 2) 재 인증 교부료는 10,000원으로 한다.
- 3) 한국호스피스협회 산하 기관은 자원봉사자의 학술/봉사평점과 관련된 자원봉사자 평점 관리대장을 보유하여 평점을 기록관리 하고 협회에서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.
- 4) 지회세미나와 기관 보수교육 일정(2007년)을 보고하고 평점 인정을 받도록 기관에 시행령으로 내릴 것 (내년 계획서를 보고받을 것 (2006년), 기관의 질 관리)
- 5) 평점을 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 협회에 계획서를 보고 할 것
- 6) 07년 '추계 학술지에 재 인증 시행규칙'을 게재할 것